

특별공급 서류안내

I-A
NUL
CHE

다자녀가구

자격 검증 제출서류안내(다자녀 특별공급)

※ 당첨자(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포함)는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비서류 제출일 내 견본주택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당첨자(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포함)는 아래 “공통서류”와 “다자녀 특별공급 서류”를 반드시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.

▣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

구분	제출유형		구비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특별공급 서약서	-	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, 특별공급 당첨자 서약서 작성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(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사용시 본인만 접수 가능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,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징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자축에 6개월 이상 기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3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됨 -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)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
다자녀 특별공급	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)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			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 바람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 확인에 필요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-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(1년 이상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전부 공개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“상세”로 발급 바람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비속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 확인에 필요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접수를 산정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	-	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, 신청자 본인 접수신청 및 인적사항 기록
부적격 발은자 (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존속 포함)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접수를 받은 경우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3년이상)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존속 포함)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접수를 받은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로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-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관련 진단서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	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와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○		무주택 소명서류	-	긴밀등기사회증명서 또는 긴밀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기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/저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
	○				
	○				
	○		기타서류	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

*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6.30.(목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(포함) 되어야 할 내용 : 세대 구성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 / 변동일 / 변동사유, 고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
-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금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) 등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
* 2005. 7.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* 일반 특별공급 청약 시 기첨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대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(초)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개별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